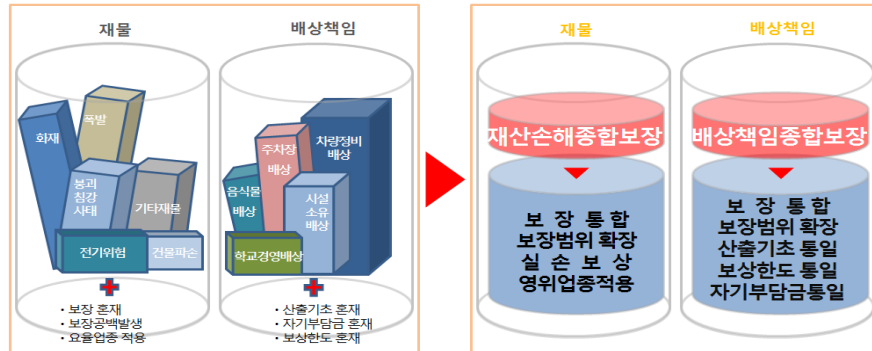


● 문답식 상품해설 (Q & A)

Q1) 이 상품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.

- A) 이 상품은 일반물건을 대상으로 주요 재물 및 배상책임 위험을 각각 통합하여 피보험자가 사업활동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종합 보장합니다. 특히, 보장의 통합뿐 아니라 고객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품이 되도록 기존의 혼재되어 있던 보장범위, 보상한도, 자기부담금, 산출기초, 약관 등을 통일하고 정리한 상품입니다.



Q2) 재산손해종합의 효율의 영위업종 적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.

- A) 이 상품의 재산손해 효율은 방화구획 내에 각 업종별 적용효율 중 최고효율이 어떤 업종인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 본인의 영위업종의 효율을 적용합니다.

Q3) 배상책임종합의 산출기초 통일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.

- A) 기존의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 피보험자의 업종과 보상하는 위험에 따라서 보험료 계산에 필요한 산출기초가 면적, 연평균 매출액, 좌석수, 객실수 등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. 이 상품은 주요 배상책임담보 담보의 산출기초를 모두 면적으로 통일하여 면적의 고지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
| 기존 배상책임 담보 |                | 배상책임종합 |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
| 구분         | 산출기초           | 구분     | 산출기초 |
| 시설소유(관리)자  | 면적, 객실수, 좌석수 등 | 배상책임종합 | 면적   |
| 음식물        | 연평균 매출액        |        |      |
| 주차장        | 면적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
Q4) 재산손해종합의 보장범위 확장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.

- A) 재산손해의 확장된 보장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○:보장, ×: 면책)

| 보장위험       | 기존<br>재물담보 | 재산손해<br>종합보장 | 보장하는 보험의 목적의 범위 |    |      |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|
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건물              | 시설 | 집기비품 | 동산 |
| 화재손해       | ○          | ○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| ○  | ○    | ○  |
| 붕괴·침강 및 사태 | ○          | ○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| ○  | ○    | ○  |
| 구내폭발·파열    | ○          | ○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| ○  | ○    | ○  |

|           |   |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|   |
|-----------|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차량 등의 충돌  | ○ | ○ | ○ | ○                | ○ | ○ |
| 항공기 낙하물   | ○ | ○ | ○ | ○                | ○ | ○ |
| 제3자 고의 파손 | × | ○ | ○ | △ <sup>주1)</sup> | △ | △ |
| 기타파손      | × | ○ | ○ | ×                | × | × |
| 누수손해 등    | × | × | × | ×                | × | × |
| 풍수재       | × | × | × | ×                | × | × |

- 주1) 건물을 제외한 보험의 목적의 제3자의 고의(자동차 운전중 충돌로 인한 파손 제외)에 의한 파손손해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합니다.
- 주2) 건물 및 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에 생긴 손해는 1사고당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. 다만, 화재, 구내 폭발·파열, 붕괴, 침강 및 사태로 인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주3) 주2)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유리손해와 주1)에 해당하는 제3자의 고의(자동차 운전중 충돌로 인한 파손 제외)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리손해에 한하여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**Q5) 배상책임종합의 보장범위 확장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.**

- A) 보험증권 상에 기재된 소재지 안(구내)에서 발생하는 위험만을 보장해드리는 시설소유(관리)자 배상책임에서 보상하던 위험의 보장범위가 구내, 구외를 구분하지 않고 영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장해드리는 것으로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.

**Q6) 이 상품에서 지급보험금 계산 시 비례 보상하는 보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.**

- A)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(BOP)(2404.21) 1종(일반물건 신계약용)의 재산손해종합보장(영위업종적용) 비례보상형을 선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비례보상합니다.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금 계산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% 미만일 경우<br>(단, 동산 제외) | 손해액 × $\frac{\text{보험가입금액}}{\text{보험가액의 80\% 해당액}}$ |
| 동산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               | 손해액 × $\frac{\text{보험가입금액}}{\text{보험가액}}$           |

보상방식 선택에 상관 없이 임차자(재산손해)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비례보상합니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임차자(화재)배상책임 특별약관의<br>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 보상액 |
| 손해액 × $\frac{\text{보상한도액}}{\text{보험가액}}$     |

**Q7) 급배수누출손해(자기부담금10%)(일반물건) 특별약관은 무엇이고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?**

A-1) 급배수누출손해(자기부담금10%)(일반물건)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급배수시설의 누수 또는 방수로 입은 직접손해의 90%를 보상합니다.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.

「보험의 목적의 수조,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」  
단,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
A-2) 급배수누출손해(자기부담금10%)(일반물건) 특별약관의 면책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며,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물건들(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자체 등)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**Q8) 이 상품의 만기환급금 및 만기유지보너스는 어떻게 지급되나요?**

A1) 회사는 이 보험의 기본계약 만기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리며, 공시이율의 변경, 계약내용의 변경,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실제 만기환급금은 최초 가입시 예시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납입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(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)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,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, 계약내용의 변경,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A2) 회사는 이 보험이 해지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지 않고,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(기본계약 만기시점의 계약해당일)까지 유지된 경우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만기유지보너스 금액을 만기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해 드립니다.

단, 만기유지보너스 금액은 계약내용의 변경, 보험료 실제 납입여부 등에 따라 최초 가입시 예시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, 계약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사가 중대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시점의 만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